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웅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85
----------	------

발의연월일 : 2020년 10월 16일

발 의 자 : 정재웅 의원 (1명)

찬 성 자 : 김경우, 김정태, 김춘례, 김호평,
송재혁, 송이량, 여명, 이호대,
추승우, 권영희 의원(10명)

1. 제안이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듣고 이를 존중하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39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법 제35조에 따른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9조(윤리특별위원회) ① ~ ③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39조(윤리특별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39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u></p> <p>제39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p> <p>① <u>법 제35조에 따른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u></p> <p>② <u>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u></p> <p>③ <u>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u></p>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조(윤리특별위원회) 제4항 및 제39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하도록 개정하여 비용이 발생하나, 최근 3년간 윤리특별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여 개최횟수를 예측하기 곤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의 기술적 비용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가.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주 무 관 김민호

☎ 02-2180-7932

e-mail : waterkim@seoul.go.kr